##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재보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제2조제3항 중 "것"이란"을 "법률"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6항제13호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으로 하고, 라목,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법 제2조제9호다목
- 마. 영 제2조제10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 바.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제2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 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영항을"을 "영향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한다)에"를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 공사

제2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 를 하는 경우
- 2. 법인인 전문금융소비자(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명서만 해당한다)

제22조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제35조제2항 중 "제18조제1호의"를 "제22조제1호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6조제14항 중 "제13조제2항제5호"를 "제13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7-4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제4-3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6호 각목 외의 본문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조제2항제4호에서 "금	②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령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	3
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가재정법」 별	
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	
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업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
	본법」 제51조제2항에 따
	른 사업에 해당하는 대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
	호마목에 따른 재보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u> </u>
③ 영 제2조제3항제13호에서 "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u>것"이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④·⑤ (생 략)
- ⑥ 영 제2조제10항제1호아목에 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 12. (생략)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u> 외국인 가. ~ 다. (생 략) <신 설>

⑦ (생략)

⑧ 영 제2조제10항제2호바목·같은 항 제3호바목 및 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2호부터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단서 신설 >

률"이란
④·⑤ (현행과 같음)
6
1. ~ 12. (현행과 같음)
13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2조제9호다목
마. 영 제2조제10항제3호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바.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7) (현행과 같음)
8
<u>다만, 「조</u>
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

제13조(설명서) ① 금융상품판매 업자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 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 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 1. ~ 4. (생 략)
- 5. 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항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다만, 예금성 상품 등 설명서의 내용이 간단하여 요약이 불필요한 금융

-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
-	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
-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
-	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_	체결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	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
_	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
	<u>다.</u>
1	13조(설명서) ①
-	
-	
	1. ~ 4. (현행과 같음)
Į	ō
	영향을

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저 ① 영 제15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1. (생략)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프로젝트 금융(대출로 한정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젝트금융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따른 이익을 금융소비자와 공유하는 법인

<신 설>

제21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생 <sup>전</sup>략)

<신 설>

•
제14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1. (현행과 같음)
2
프로젝트금융(대출로 한
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구
조의 금융상품에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
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제21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 제22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제 자의 금지행위) 영 제23조제3항 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생략)
  - 2.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업을 영위하는 행위(가목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대부업·대부 중개업 <단서 신설>

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
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법인인 전문금융소비자(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
명서만 해당한다)
]22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의 금지행위)
1. (현행과 같음)
2
가
<u>다만, 대출성 상품에</u>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
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
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1.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

나. ~ 라. (생 략) 3. ~ 7. (생 략) 제35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6항 제10호·제11호 및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u>제18조제1호의 적용에 대하여 2021년 3월 2</u>5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2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 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 매대리·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